

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6고단400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김민정(기소), 윤서영(공판)
판 결 선 고 2026. 5. 11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『2026고단400』

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, 2층에 있는 'C'을 운영하는 자이다.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. 1. 8.경 'C' 영업소 내에서, 노래 시설을 갖추고 음



악을 공연케 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사단법인 D가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'E'(F 작사, G 작곡)를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공연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H에 대한 진술서

1. 고소장

1. 수사보고서(C 현장영상 첨부 미 및 범죄일자 수정)

1. 수사결과보고서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,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, 사단법인 D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¹⁾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

1)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단서 제1호에서 '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'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고,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영리목적의 여부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7-23

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목명균 _____